

고운교양교육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연구소는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교양대학 부설 고운교양교육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연구소는 본교 교양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연구 및 시의에 맞는 융·복합 교양 교과목 개발하는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지식문화 창조 및 학습역량을 보유한 인재 양성이라는 본교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, 기초 교양 교육 연구 및 그 실천적 적용에 대해 연구하고, 제반 학문의 방법론과 체계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다.

제3조(사업)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기초적 교양 능력 함양을 위한 글쓰기교육, 역사 교육, 자연과학 및 기초공학, 문화예술 함양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추진
2. 교양 교육 관련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의 개최 및 연구 결과의 발표와 보급의 업무
3. 본 연구소 발간 학술지 ‘고운교양교육논총’을 연간 2회 발간
4.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
5. 종합적 의사소통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
6. 교양교육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
7.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기록
8. 교양교육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,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수행
9. 교양교육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제반 활동
10. 국내·외 소재 대학의 교양교육연구소와의 협동연구
11. 교양대학 중점 과목인 ‘열린 교양’ 강좌 강사 섭외 및 제반 운영
12. 논문 및 보고서 작성법, 프리젠테이션 작성 특별 강좌 시행

제4조(위치) 이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.

제 2 장 조 직

제5조(구성)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.

1. 연구소장
2. 운영위원
3. 편집위원
4. 간사
5. 전임연구원(기획, 연구, 편집)

6. 사무조교

제6조(연구소장)

- ① 연구소장은 본교 교양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를 통괄한다.
-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)

- ① 운영위원은 본교 교양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-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.
-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편집위원)

- ① 편집위원은 국내외 대학의 전임(연구)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- ②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.
-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전임연구원)

-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거쳐 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다.
- ②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연구상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과 사무조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재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조교) 이 연구소의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조교를 임명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운영위원회)

- ① 이 연구소의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이 연구소의 운영의 기본방침 결정
 2. 이 연구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3. 이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 심의
 4. 기타 이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된다. 연구소장 부재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.

-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은 열어야 하며,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편집위원회)

- ① 이 연구소의 간행물 발간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-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회한다.
 - 1. 『고운교양교육논총』의 편집 발간 방침 및 편집 세칙결정
 - 2. 기타 교양교육 교재 발간과 편집에 관한 사항
- ③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. 연구소장 부재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.
- ④ 편집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은 열어야 하며,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편집 위원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.
- ⑤ 편집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3조(재정)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
- 1. 정부, 지자체, 산업체, 본교에서 지원하는 연구비
- 2. 개인 및 단체의 창조금과 기부금
- 3. 연구소 인센티브
- 4. 기타 출판 수입

제14조(재정의 관리)

-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이 집행한다.
-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연구소장은 매년 모든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,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15조(폐소)

이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